

과천도시공사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3호

개정 2022.5.11. 규정 제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22.5.11.)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0.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

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④ 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에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사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이사회운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인 이사회 의사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접수순위에 따라 부여하고, 그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사회 소집통지

서와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당해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사록 작성) 의사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 의결사항은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회 사무관리) ① 이사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사록 등의 보존) 이사회 의사록, 서면결의서(별지 제6호서식) 및 부의원안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장 제출) 이사회에 대리참석 하는 자는 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변상) ① 공사 소속이 아닌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지급은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5.11. 규정 제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상임이사(본부장)” 을 “상임이사” 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관련)

이사회 부의안건

제 회 이 사 회			
년 월 일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구 분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제 안 자

주 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참고사항

1. 제안근거
2. 예산조치
3. 합 의
4. 절 차
5.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이사회 의사 관리대장 (제9조 관련)

회의차수	일 자	의안번호	건 명	제안부서	의결(보고)내용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관련)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 신 :

년도 제 회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이사회 장소 :
3. 부 의 안 건 : 별 첨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 이사회의장 (인)

[별지 제3-1호서식]
(제9조 관련)

년 월 일 제 회 이사회 상정안건

안전심의

보고사항

[별지 제4호서식]
(제11조 관련)

년 월 일 제 회
이사회 의사록

안전심의

과천도시공사

(별지 제4-1호서식)

(제11조 관련)

년 월 일 제 회 이사회 일시출석·심의안건

- 일 시 : 년 월 일(요일)
- 자 : 시 분
- 지 : 시 분
- 장 소 :
- 총이사수 : 인
- 감 사 : 인
- 출석이사수 : 인
- 감 사 : 인
- 의 장 :

의장이 년도 제 회 이사회 개최선언에 의거 사장
(관계직원)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별첨)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

[별지 제4-2호서식]
 (제11조 관련)

의안 목록표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건 명 : 의결내용 :			
건 명 : 의결내용 :			

[별지 제4-3호서식]
(제11조 관련)

년 월 일 제 회 이사회 토의심의 진행 회의록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별지 제4-4호서식]
(제11조 관련)

년 월 일 제 회 이사회이사감사서명록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

위 심의·토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감사 서명
날인함.

직 위	성 명	서 명 날 인

[별지 제5호서식]

이사회 심의 결과 통보서 (제12조 관련)

수 신 :

참 조 :

제 회 이사회(20 . . .)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의결내용 :			

200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사장

[별지 제6호서식]
 (제14조 관련)

제 회 이사회 서면결의서

제 목 :

표제의 별첨 사항을 이사회에 부합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 날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천시공사사장 (인)

직 위	성 명	의 견	서 명	비 고
사 장				
상 임 이 사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